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8.

발 의 자 : 김재원 · 강경숙 · 이해민

박은정 · 신장식 · 김준형

백선희 · 장종태 · 임오경

황운하 · 차규근 · 김교홍

강준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K-POP 콘서트,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 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 또한, 성수기 · 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‘바가지 요금’이 반복 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.

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 ·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등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도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관광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을 평상 시, 대규모 행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숙박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

인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3 신설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- ④ 관광숙박업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숙박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관광특별관리기간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인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

다른 관광특별관리기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업자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관광숙박업자의 준수 사항) (생 략)	제18조의2(관광숙박업자의 준수 사항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관광숙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 요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<u>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관광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<u>관광숙박업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숙박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3(관광특별관리기간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규모 관광 행사 등으로 인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</u>

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
광숙박 요금의 안정 및 관리를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관광특별관리기간을
지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1항에 따른 관광특별관리기
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
관광숙박 요금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에는 관광숙박업자에 대해 그
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